

【 3 】 양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2.
발 의 자 : 이종호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수급자의 전세자금과 학자금에 국한된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및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와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 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나. 융자대상 (안 제16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로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상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과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다. 융자금액 (안 제17조)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 학자금은 연간 500만원

라. 자활지원사업자금의 사용 (안 제24조)

자활지원 사업자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근로 참가자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비용에 사용

마. 지원대상 (안 제25조)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수급자 채용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바. 사업자금의 대여 (안 제28조)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은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여

□ 개정조례안 : 별첨1

□ 관련법령 발췌: 별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산수반사항 : 100,000,000원(년간)

- 생활안정전세자금
 $10,000,000\text{원} \times 3\text{가구} = 30,000,000\text{원}$
- 자활지원사업자금
 $70,000,000\text{원} \times 1\text{개단체} = 70,000,000\text{원}$

□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추가소요예산내역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한다.

양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공동체를 말한다.

4. “자활근로참가자” 라 함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2. 자금의 운용수익금
3. 국·도비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자금의 용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자활지원사업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자금의 관리·운용) ① 자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 한다.

- ② 매년 발생한 이자는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제2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자활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활안정자금용자와 자활지원사업의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주시생활보장위원회”가 “용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용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및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으로 설치한 “양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합 운영한다.

제8조(실비 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구성)**
 -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 ④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심의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자활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초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실비 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16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한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4. 본인 또는 직계비속으로 2년제 대학이상의 학자금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

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액 등) ①자금의 융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일반융자와 제4호의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일반융자는 세대당 1천만원, 학자금융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2%로 한다.

제18조(융자 신청) ①융자금률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부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1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3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22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자활지원사업

제24조(자금의 사용)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3. 「법」 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7.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25조(지원대상)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
위계층

3. 「법」 제18조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제22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개인·기

관·단체

제2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지원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25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
동체에 대한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력을 상실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에 따라 이미 적립한 자금 및 조성된 운용
수익금, 대부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